

통계법 시행령

[시행 2025. 10. 1.] [대통령령 제35808호, 2025. 10. 1., 타법개정]

【제정·개정 이유】

제정·개정문

전체 제정·개정이유

타법개정 제개정이유(접기)

[제정]

◇ 제정이유

통계의 기준설정과 인구조사, 통계·데이터 총괄·조정 및 각종 통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통계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데이터처로 격상하는 등의 내용으로 「정부조직법」이 개정(법률 제21065호, 2025. 10. 1. 공포·시행)됨에 따라,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.

◇ 주요내용

가. 국가데이터처의 직무(제3조)

국가데이터처는 국가통계활동의 전반적인 기획 및 조정, 통계기준의 설정, 각종 경제·사회통계의 작성 및 분석, 통계정보의 처리 및 관리, 통계·데이터 총괄·조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.

나. 국가데이터처에 두는 하부조직(제4조)

국가데이터처의 하부조직으로 대변인·기획조정관·감사담당관, 운영지원과·통계정책국·통계서비스국·경제통계국·사회통계국·조사관리국 및 국가데이터관리본부를 둬.

다. 국가데이터처의 소속기관(제17조부터 제26조까지)

국가데이터처장의 소속기관으로 통계인재개발원, 국가통계연구원 및 각 지방통계관서를 둬.

라. 국가데이터처 및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(제27조·제28조, 별표 2 및 별표 3)

국가데이터처에 699명(정무직 1명, 고위공무원단 11명, 3급 또는 4급 이하 686명, 전문경력관 1명)의 정원을 두고, 국가데이터처 소속기관에 1,423명(고위공무원단 4명, 3급 또는 4급 이하 1,419명)의 정원을 둬.

로. 국가데이터처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(제30조 및 별표 4)

국가데이터처에 국가데이터관리본부, 국가데이터관리본부 1개 정책관등 및 국가데이터관리본부 2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둬.

<법제처 제공>

【제정·개정 문】

제정·개정이유

전체 제정·개정문

[본문 생략]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및 제3조 생략

제4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 생략

② 통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의2제2항, 제2조의3제1항제8호, 제2조의4제3항 본문, 제2조의5제1항, 같은 조 제2항 전단·후단, 같은 조 제3항 전단, 제2조의6제1항, 같은 조 제2항 전단, 같은 조 제4항, 제7조제1항제4호,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,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, 같은 항 제5호, 같은 조 제2항,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,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,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, 같은 조 제3항·제4항, 제16조제2항·제3항, 제17조, 제1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, 같은 조 제3항 전단, 제17조의3제1항·제2항, 제17조의4제3항 각 호 외의 부분,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, 제19조제1항 전단, 같은 조 제2항 전단, 같은 조 제3항, 제19조의2제1항·제2항, 제2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, 같은 조 제4항 전단,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, 같은 조 제4항 전단, 제22조제1항 전단, 같은 조 제2항 전단, 같은 조 제3항,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, 같은 조 제4항 전단, 제24조제1항 본문, 같은 조 제2항 본문,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, 같은 조 제4항 전단, 같은 조 제5항 전단, 제25조제3호 단서, 같은 조 제4호 단서, 같은 조 제8호, 제26조제1항 본문, 같은 조 제2항, 같은 조 제3항 본문, 같은 조 제4항 전단, 같은 조 제5항, 제2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, 같은 조 제4항 전단, 제28조제1항 본문, 같은 조 제2항 본문, 같은 조 제3항, 같은 조 제5항, 같은 조 제6항 전단, 제29조, 제35조제1항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,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,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, 같은 조 제3항·제4항·제6항, 같은 조 제7항제2호, 제39조의3, 제39조의4제1항, 제41조제1항·제3항, 제41조의2, 제4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, 제44조제1항·제2항, 제45조의2제2항, 제45조의3제2항 본문, 같은 조 제3항 본문·단서, 같은 조 제4항, 같은 조 제5항 본문, 제47조제2항 본문, 제48조제1항, 제49조의2제3항·제4항, 제5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, 같은 조 제4항,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, 같은 조 제2항, 제52조의2제1항·제2항 및 제52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통계청장"을 각각 "국가데이터처장"으로 한다.

제2조의4제2항제5호,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, 제17조의4제4항 각 호 외의 부분, 제19조제1항 전단, 제22조제1항 전단, 제24조제1항 본문,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, 같은 조 제4항 전단, 제26조제1항 본문, 제28조제1항 본문, 제32조, 제39조의4제4항·제5항, 제42조의3제1항 및 제3항 중 "기획재정부령"을 각각 "총리령"으로 한다.

제2조의4제3항 본문 중 "통계청의"를 "국가데이터처의"로 한다.

제8조제2호 중 "통계청과"를 "국가데이터처와"로 한다.

제17조 중 "통계청 소속"을 "국가데이터처 소속"으로 한다.

제25조제3호 단서 및 같은 조 제4호 단서 중 "여성가족부장관"을 각각 "성평등가족부장관"으로 한다.

제52조의 제목 "(통계청장의 사무 위탁)"을 "(국가데이터처장의 사무 위탁)"으로 한다.

별표 제2호마목의 위반행위란 및 같은 호 사목2)부터 10)까지의 위반행위란 중 "통계청장"을 각각 "국가데이터처장"으로 한다.